

##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 제12.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창출 및 유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감소시키고 제거하기로 약속한다.
  - 가. 사적 그리고 공적 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업 활동에 경쟁 법령 적용, 그리고
  - 나. 경제주체 간, 또는 생산의 원산지 및 목적지 간 차별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경쟁 법령 적용
3.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 과정에 있어 이 협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의하여 감소 또는 상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자의 경쟁법을 이 장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 제1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영업행위**란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기업 간 반경쟁적 협정, 동조적 관행 또는 약정, 그리고 양 당사국 각국의 경쟁법에 명시된 기업단체의 결정
- 나.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 그리고
- 다. 특히 영역 내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의 합병 또는 다른 구조적 결합

이러한 행위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어떠한 기업에 의하여서든 수행되는 것일 수 있다.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상무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나. 뉴질랜드의 경우, 1986년 「상법」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나. 뉴질랜드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 과 그 이행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 제12.3조

#### 이행

1.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이들 법과 그 집행은 투명성, 포괄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에게 발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심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투명성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모든 면제는 투명하고, 그리고 공공 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 제12.4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자국의 당국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기술적 협력, 통보, 협의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 제12.5조 통보

1.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12.8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러한 집행 활동을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통보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그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제12.6조 협의와 정보의 교환

1.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 관련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요청 당사국이 표명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효과적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각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을 조건으로 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나 문서를 제공한 당사국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떠한 인에게도 그러한 정보나 문서를 반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 제12.7조 기술적 협력

양 당사국은 자원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에 관련된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적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연수를 목적으로 한 인력 교환
- 나.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의하여 구성된 경쟁법 및 정책의 연수 강좌에서 인력이 강연자 또는 자문사로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상호 결정한 기술적 협력의 그 밖의 모든 유형

### 제12.8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서로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 제12.9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소비자 보호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국제 사기의

감시와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경우에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기만적인 관행 또는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으로부터 자국 영역에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상품의 거짓,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을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 제12.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한다.